

제434회 국회 제1호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4월6일(월)

장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재정경제부 소관
 - 기획예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 재정경제부 소관
 - 기획예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2

(11시21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재정경제부 소관
 - 기획예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11시22분)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국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조달청 순으로 하고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부 소관 추경의 국세수입입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 보시면 국세수입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에 총 29.9조 원을 증액 경정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3개 세목에 총 4.7조 원을 감액 경정하여 국세 전체로 총 25.2조 원을 증액 경정하려는 추경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경 일정으로는 3월까지의 세수 진도만 파악할 수 있고, 2025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3월 말 신고와 2026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8월 말 중간예납이 끝나지 않아 향후 전망치를 근거로 세입경정을 하는 상황이며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 및 투자심리 악화로 증권거래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 증액 경정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경정 중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현재 법인세가 14.8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월 말 신고와 26년 귀속 법인세 8월 중간예납이 끝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3월 말에, 기업 쪽에서 작년 세입의 세금신고가 3월 말까지 있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25년 말의 실적 정도는 어느 정도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예측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주가 그리고 재무제표 등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에프엔가이드의 컨센서스에 의하면 현재 26년 3월 말의 컨센서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개 기업의 수익률, 영업이익이 각각 당초

예상의 4배와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AI에 의한 전망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AI 전망에 의한 법인세의 증가 추세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와 주가 상승 추세보다는 훨씬 보수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와 기존 여러 가지 자료들, 빅데이터를 모두 종합한 AI 모델의 전망에 근거해서 14.8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작년 5월에……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때 추가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차관님, AI 전망과 부처에서의 전망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쟁 추경이라고, 경제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세입예산은 또 역대급 호황을 전제로 잡은 모순이 보입니다. 어쨌든 OECD에서는 성장률이 하향된다고 그리고 또 3월의 증권거래대금은 급감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처에서는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추경 문제는, 어쨌든 추경에 대한 일반 요건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세수입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25조 도저히 인정 못 하겠다?

○소위원장 정일영 도저히는 아니겠지, 조금.

○김태년 위원 그냥 인정 못 하겠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소위원장 정일영 예,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OECD나 이쪽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에 관한 거고 지금 반도체 부분은 이와 다릅니다. 반도체 부분은 지금 AI 투자 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상 이상으로 훨씬, 예상의 거의 3~4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삼성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DDR5, DDR4 8GB RA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1.3불이었는데 지금 13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물량의 증가보다는 이러한 가격의 급등, 그리고 HBM이라든지 DDR5 같은 제품의 고급화 이런 것 때문에 물량 증가보다는 가격 급등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지금 모든 게 AI가 경제 전반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법인세 전망은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산업 전반을 이끌고 있는 바로 AI 산업의 전망에 근거를 둔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여기 25조 중에 법인세가 15조고, 크게 보면 법인세 더 들어온 게 15조고 증권거래세가 한 10조쯤 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 15조 중의 10조가 주로 반도체고 5조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포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전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당분간 계속 호황일 테니까. 그런데 일반 법인세 이 5조와 관련해서는 수정 필요성은 못 느끼니까, 타 산업?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법인세의 순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의 증가분 예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요, 그것은 주식시장 거래대금 급증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거는 10조.

○**박성훈 위원** 농특세 늘어난 부분……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조세 담당자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자세히 정확하게, 길게는 하지 말고.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4.8조 중에서 대부분 잡은 게 중간예납, 8월 달에 들어올 세수입니다. 11.4조 원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증가분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가분의 경우에는 증가분이 더 크게 전망이 되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1.4조 원으로 잡았고요.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작년에 세입 편성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조금 악화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반도체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대금의 경우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잡은 것은 6개월 평균, 그러니까 하루 평균 44조 원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달, 2월 달에는 한 60조 원 정도로 거래대금이 늘어났다가 3월 초에는 100조 원 넘게 늘어났다가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50조 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조 원대로. 중동전쟁 이후에도 50조 원대에서 거의 안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4조 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거래세 44조 원으로 잡았다는데 뭐.

○**이인선 위원** 그걸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차관하고 국장이 책임지세요.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책임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책임을 질지 그때 가서 따지자고.

○이인선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국장이.

○소위원장 정일영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박성훈 위원 국장님, 농특세가 늘어난 것은 이번 증권거래세가 증가하면서 20% 자동
으로 늘어난 부분인 거고요……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중에서 1.5%는 농특세
로……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자동으로, 동일하게 같이 늘어납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근소세가 늘어난 것은 상용근로자 늘어난 거로 인해서……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근소세가 늘어난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올해
임금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고용증가율을 더 높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세수가
조금 높아져 가지고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노동연구원 전망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박성훈 위원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했냐?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이 정도 하시고.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더 말씀들
하실 게 많을 것 같아.

공자기금.

○전문위원 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채 인수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현 계획이 1000억 원
이었는데 1000억 원 추가로 해서 변경안에서는 200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1000억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이유 중간의 박스 내용 보시면 이번에 1000억 증액한 내역입니다. 전라남도 및 광
주광역시에서 제출된 수요 100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이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내국세
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지자체 가용재원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행정
통합에 따른 지방채 인수는 추경 사유에는 불부합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지방과 수도권의 격
차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지방통합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현재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남·
광주 쪽의 전산 통합을 하는 등 주요 어디셔널(additional)한 자금 수요가 거의 1000억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것
자체가 기존의 재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1000억을 금액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실 저리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빌려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이, 다른 행정통합 과정에서 만일 수요가 온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서 이러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이 의견 내셨네. 먼저 한번 하시고.

○이인선 위원 지금 어쨌든 행정통합 문제가 광주·전남이 가면서 대구·경북도 가기를 엄청 원했는데 아직까지 원치 않는 충남·대전 때문에 발목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기반시설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은 지방채 인수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데 그러면 다른 대구·경북도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재경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다 같이 행정통합은 내년이든 어쨌든 계속 원하고 진행될 것 아닙니까, 2년 후가 되든.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채 인수는 저는 추경 사유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통합이 갔으니까 그게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니까 가야 되지만 단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면 좋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인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저는 행정통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고 본예산은 반영할 시기도 안 됐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채 인수보다는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래서 저희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이게 사실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직접 주는 것도 있잖아.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거기서 직접 해야 될 게 시스템 통합이니 도로 정비, 안내 이런 것 해서 1000억 가까이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돈 빌려줄게 너희 돈으로 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일종의 저리 자금 대부.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광주·전남 같은 경우 워낙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지방채 인수를 추경으로, 특히나 행정통합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추경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소위원장 정일영 누구든지 얘기를 하시고요, 마이크 켜고.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허승철 국고정책관 허승철입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 추경을 거쳐 가지고 1조 2000억 원의 지방채 인수를 확대를 했고요. 다만 이게 행정통합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없지요? 처음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허승철** 이것은 법적인 근거보다도 사실상 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수요 그리고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인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행정통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방채 인수라고 하면 과거에 정부가 해 왔던 지방채 인수와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지방채 인수를 하기보다 앞에서 조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채 인수라는 이런 간접보조 형식을 취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가 국고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채 인수라는 이 형태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다양하게 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를 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누가 설명을 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가 4.7조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인철 위원** 예산실에서 설명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박성훈 위원** 예, 차관님보다는.

○**소위원장 정일영** 밖에 누구 가서 예산실의 아까 경제예산심의관이나 총괄심의관 혹시 있으면 잠깐……

○**박성훈 위원** 박창환 국장이나……

이것 법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게……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법에까지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전체적인 지방채 한도나 이것은 저희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계획을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런 사례가 처음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정일영** 처음이니까, 통합도 처음이고 하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건 특수한 정책적인 수요기 때문에……

○**이인선 위원** 차관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진짜 이 문제는 광주·전남이 굉장히 어렵듯이 사실 경북도 소멸도시 8개가 어렵잖아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봐 줘야 되는……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그 뒤에 앉아요, 저쪽 마이크 있는 데.

자료 5페이지의 지방채 인수, 행정통합 광주·전남. 전남·광주에 1000억을 이런 형태로……

○**박성훈 위원** 국장님, 딱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교부세라든지 여

러 가지 형태의 지원 방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서 굳이 지방채 인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지방채 인수의 목적이 별도로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는 언제든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거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위원님 두 번째 주신 여러 가지 방식, 교부세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굳이 지방채 인수를 이번에 하게 된 것은 행정통합 할 때 정부에서 연간 5조씩 4년간 20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항목 중에 지금 내려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채 인수라는 형태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내년부터 그 지원이 시작되게 되면 정부에서는 반환받는 형식으로 계정을 약간 분리하는 성격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인철 위원 총괄국장님, 20조 내려가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내려갈지 모르겠다, 몰라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20조 내려가는 것은 저희 생각은, 지방의 의원들 생각은 럽섬(lump sum)으로 내려가는 거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어떤 항목을 정해서 내려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게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우리 쪽에서는 컨센서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방채를 인수하고 차후에 상환시키겠다 이것은 일단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성훈 위원이 제기했듯이…… 제가 제기를 했어요, 왜 이걸 직접지원 할 수도 있는데 지방채 인수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굳이 지방채 인수로 안 하고 직접지원……

지금 전남에서 계속 들고 오지요, 한 500~600억인가 이렇게?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400억 정도.

○조인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돌려서 지방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거기 지방자립도도 뻔하잖아요. 돈 빌려서 해라라고 하는 게 안 맞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조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6월 선거 끝나고 나서 7월에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는데 출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직접지원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의 이해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연간 5조씩 해서 4년간 20조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5조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할 몫이지, 그런 재량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 연간 5조씩 4년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재원으

로 어디다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자율성을 주면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권고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통합시가 출범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를 별도로 하지 말고 조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직접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유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어쨌든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해서 20조 그 예산은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 7월부터 통합시가 발족돼 가지고 스타트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남 그쪽 지역에서 400억, 500억 정도를 요청하는데 그게 직접지원이…… 거기서는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그게 어려워 지금 지방채 저리로 인수하는 걸로?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그쪽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열심히 요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보면 통합에 따른 전 광관 설치 그다음에 명패 교체,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입니다. 그게 과연 국고지원을 하는 중앙정부적 사무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는 직접 편성을 하기는 어려웠고 고유가 추경에도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대충 여기 됐으니까 조 위원님이 양해해 해 주시고 박성훈 위원님도……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오히려 저는 총괄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진행을 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성격에 맞지도 않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담아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그런데 7월에 당장 출범이 예정되어 닥쳐온 현실이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예산은 지자체에 없고.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포함한 걸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일독을 다 끝내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합시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 총괄국장,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타 지자체 간에도 행정통합을 할 때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향후 동일한 규모의 지방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 주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대구·경북 한다면……

○김태년 위원 하면.

○이인선 위원 한다면,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한다면’.

○조인철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인선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돈 없다고 안 해 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공자기금이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은 의견을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차관하고 합의해서 좋은 문구로……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대안 문구로 한번……

○박성훈 위원 예산실에서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소위원장 정일영 가능한 부대의견을 넣는 걸로 하고요.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행정통합에 대한 부대의견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인선 위원님이 학업에 상당히 충실하신데 오늘은 유난히 충실하시네.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일영 원래 충실하셔, 원래.

○박성훈 위원 저는 기준은 어느 지역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예비비.

아까 다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기획처 뭐가 있지? 예비비만 있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비비하고 뒤에 균특세입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재경부 끝났고 이제 부처가 바뀌었으니까.

○조인철 위원 기획처 들어가니까 오후로……

○박성훈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놓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도 좀 더 하고 가.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10분 만에 끝내 주시고 식사하시면 안 됩니까?

○김태년 위원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이동 시간.

○박성훈 위원 그래도 직원들 많이 기다렸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기다렸는데.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10분 만에 끝내 주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한 5분만 하고……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5분 만에 끝내 주십시오. 금방, 아까 다 보고받으셔 가지고……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이것 지금 너무 많아.

○김태년 위원 가만있어 봐,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끝내 주시지요’ 그러고 막 앉아 버리고……

○조인철 위원 엄청 많은데?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아니야.

일단 차관님, 예비비……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빨리 끝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간에 아까 예비비 비공개로 해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3개월 만에 끝날지 내일 끝날지 6개월로 끝날지.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잘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분기별로 저희가……

○소위원장 정일영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비비에 두 가지 부대의견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논의해야 돼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에 5조 원이 늘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보시면 예비비가 통으로 5조 원이 늘어나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랑 섞여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5조 원에 대한 것은 이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그 취지에 맞지 9조 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막 섞어 쓸 수 있도록 하면 좀……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세입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소요가 생기지만 원래 있는 목적예비비에서 남으면 그 돈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어차피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도 국회에 와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려야 되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하여튼 목적예비비가 통으로 들어가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고 남는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그걸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김태년 위원 목적예비비는 목적 외로 못 쓰잖아?

○소위원장 정일영 못 써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칸막이를 굳이 쳐 놓고 하면 운용하는 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더 불편해질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러니까요.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칸막이 칠 일이 아니고.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저는 수석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 용도로 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놓고 그 돈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원장 정일영 목적예비비 마음대로 못 쓰지요.

○김태년 위원 어디다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게 안 됩니다.

○조인철 위원 지출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 그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본예산의 예비비 목적이

나와 있고요. 18페이지 표에 보시면 원래 2026년 예비비 3.4조 원에 대해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몇 페이지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페이지 표 보시면 본예산의 3.4조 원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표의 추경에 밑줄 친 데 보시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것 때문에 5조 원을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원래 3.4조 원의 본예산에서 목적했던 용도와 새로 추가되는 용도 5조 원을 명시 안 하면 전체적으로 섞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5조 원의 용도는 고유가랑 공급망 위기 대응으로 들고 왔는데……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섞어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지요.

보시면 환율변동도 원래 있던 목적예비비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재난이라든지 긴급구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져온 5조가 사실은 작은지 큰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예비비 9조를 4조 칸막이, 5조 칸막이를 또 쳐 놓으면 아까 보고드린 환율 부족분 3000억은 여기에 있던 3.4조의 3000억인지 우리가 가져온 5조의 3000억인지 또 칸막이거든요. 그래서 9조를 5조, 4조 칸막이 치는 건 목적예비비의 효율성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효율성의 측면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예비비라는 원론적인 의미에 안 맞는 거지요, 그게. 뚫리면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님,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제12조에 3조 4000억의 용도에 고유가 지출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추경에서 새로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러니까 현재 3조 4000억 가지고도 고유가에 쓸 수가 있다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고유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건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조 4000억 원은 이러이러는 것 경비 이외에는 쓸 수 없다고……

○김태년 위원 환율변동은 쓸 수 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환율변동만 쓸 수가 있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환율변동만 쓸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걸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입을 할 때 있잖아요, 법인세 세입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예산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추경분이고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것 전체가 통으로 되는 것처럼 예비비도 이렇게 통으로 넣고 나중에 쓴 것을 검사받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 인건비 뭇은 얼마, 뭇은 얼마, 뭇은 얼마…… 이다음에 추경 하면 또 이번 추경

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재정을 비효율성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인철 위원** 예비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떡해.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비비의 본질적인 성격에 그건 안 맞는 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특별하게 목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통으로 1.6조 원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용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할지 아니면 통으로 쓸 수 있게 해 줄지는 소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게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뭘 자꾸 쳐 가지고 경직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데 장애가 생기거든요. 제약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열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8쪽의 박스 제1회 추경안 내용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수정안이에요, 원래 정부안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서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추가됐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나도 김태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게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전쟁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획처에서 함부로 막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 주는 게 예비비와 전쟁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고를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분기마다?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배꼽이 더 커져서 온 것을 칸막이를 안 쳐 놓고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어쨌든 무상교육 추진할 때는 목적예비비를 딱 적어 놓고 추진을 해 줬고 남은 것은 넘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제 생각에는 ‘국세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혀서 얘기하지 말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굉장히 브로드하게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김태년 위원** 지금은 브로드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요.

○**이인선 위원** 아니, 대책은 그런데 이 자체가 어쨌든 국세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나프타도 있어요.

○이인선 위원 나프타도 마찬가지고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이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맞고요. 나프타도……

○소위원장 정일영 유가 보전도 있고.

○김태년 위원 유가 보전 그다음에 운송료 보전 등등등……

○소위원장 정일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인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프타도 어쨌든 산자부에서 넣었는데 여기 추경안에 또 5000억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아서 그냥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은 삭제하고 그 위에는 명시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김태년 위원 이인선 위원님, 지금은 상황이 등등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등등등을 싹 빼 버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는 데 장애가 생긴다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산자부 것도 예비비로 다 돌려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인선 위원 그렇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오히려 예비비가 더 커지고.

○이인선 위원 거기 있는데 여기 또 중복은 안 되지.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정부 측 입장도 그리고 일부 여당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소위를 하는 목적이 이런 추경안을 만들려고 하면 그 용처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도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요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정과 추정이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세 변동이라는 이런 이유로 모든 예산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규모도 건드려야겠지만 그 범위도 한정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저희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추경 작업에 있어서도 범위라든지 구체성, 명확성은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결소위를 하는 목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22페이지에 들어 있는 25년도 본예산 목적예비비 규정 여기에 5세 무상교육 추진 유아교육비 소요경비 이것은 그 당시에 소요가 거의 확실해서 명시가 가능했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은 발생이 예상되지만 규모 자체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적예비비에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등등등’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재도 상황이 진행 중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게 지금 당장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는 2.4%였는데 다음 달에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프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처음에 석유화학단지만 문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갈수록 쓰레기봉투도 문제가 되고 수액백도 문제가 되고 이 과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고유가하고 공급망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정도도 저희가 원래 예비비는 헌법상 조항에 따르면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국가재정법의 조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그래서 원래가 총액으로 계상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 주신 구체성과 명확성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유가하고 공급망 위기 이런 지출로 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몇 차례 소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기별로 다 와서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또 전쟁 상황 감안해서 됐으면 좋겠고.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세청 이런 데 심각한 논의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몇시에 할까요?

○김태년 위원 우리 2시에 본회의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의장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년 위원 2시면 출석했다가 2시 10분에?

○이인선 위원 2시 10분에 시작이 잘 안 되니까 2시 반부터 해야지.

○김태년 위원 2시 20분 해요, 그러면.

○소위원장 정일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쪽입니다.

균특회계 관련해서 수정이유를 보시면 농어촌특별세의 초과세수 발생(5.1조 원)으로 인해서 원래 일반회계전입금을 농어촌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일반회계전입금을 해당 재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이 아닌 전체 지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농어촌특별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는 농어촌특별세 증액 결정 시 세입 증액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뭐냐, 농어촌특별세로 거둔 돈을 왜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느

냐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돈이 나오면 이쪽에 갖다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돈이 나오면 이쪽에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진실은 뭐냐? 최근 10년간 농특회계의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42조 원을 농특회계에 전출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농특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농특세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고유가 대응에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국가재정법 13조에 명시가 돼 있고 또 그동안에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42조 원이나 전출시켜 왔고 해서 부대의견은 굳이 꼭 이렇게 의견을 주시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법에 근거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 가끔 이렇게 해 왔다 이거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획처는 다 원안인데요. 그러면 의결을 하고 가실지……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저희야 의결해 주시면 좋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비비하고 뭐 특별히 수정된 게 없지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인선 위원 원안대로는 하지만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것 있잖아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딱 받는 게 어려우면 너무 브로드하니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이라고 하면 등까지도 다 풀면 되는데, 이 전체는 너무 브로드한 거고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하면 너무 크게 보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넣고 쓰는 것이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에 이게 왔으니까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김태년 위원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걸 항목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아요. 여러 개 중의 하나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요.

○이인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비용이 너무 크니까 혹시나, 물론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하잖아요.

○김태년 위원 등 하면 한두 개지. 플러스알파 한두 개인데 그것보다는……

○이인선 위원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건가요?

○김태년 위원 훨씬 많아요, 훨씬.

○소위원장 정일영 저는 처음부터 딱 박스를 치지 말고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때 추경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이인선 위원 그러면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소위원장 정일영 이 정도로 달지요.

○김태년 위원 결과를 보고……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결과를 가지고 하자.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지요.

○박성훈 위원 집행 범위의 명확성 등 표현이 조금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의 문구를 부대의견이든지 어디 하나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저희가 보기에 지금 정도 문구가 목적예비비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고유가의 파장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쓰고 나서 1년 후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드리고 심사를 한다면 좀 무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지금 난리예요. 나프타 쪽에서는 손실비용 더 늘려 달라 그러고.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할 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김태년 위원 아니야, 아니야.

○소위원장 정일영 필요 없어?

○김태년 위원 지금 이걸 안 다는 게 좋아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지금 이런 정도가, 기존 있는 정도가……

○소위원장 정일영 안 다는 게 제일 좋긴 하고.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이미 법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법에 돼 있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혹시 문구를 저희가 조금 구체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고 분기별로 보고받을 때……

○김태년 위원 일반적인 상황이면 말씀 다 듣고 다 수렴해서 뭐도 넣고 뭐도 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처음부터 박스를 치면 이게 어려워, 나중에.

○박성훈 위원 기재부차관님과 총괄국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소위에서 논의된 우려나 이런 부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감안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고.

○박성훈 위원 일단 하고,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다만 이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려했던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에 재량이 너무 많게끔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취지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이인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이인선 위원 그건 그렇게 가고요.

공공자금운용계획 지방채 인수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았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지방채 그 문구는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전문위원이 재경부랑 협의해서 달아 왔는데 나중에 재경부 의결할 때 컨펌해 주시면 됩니다. 재경부 나중에 따로 의결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재경부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경부 것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인선 위원 광주·전남 외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돼 있으니……

○소위원장 정일영 물론, 물론.

○김태년 위원 물론, 물론.

○소위원장 정일영 그건 우리 전원 일치로.

○이인선 위원 혹시나 나중에 추경 돈 없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광주·전남 줬는데 어떻게 대구·경북을 안 주겠습니까?

○이인선 위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처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국세청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국세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부터는 국세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에 관해서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안이 734억 5600만 원인데요 추경에서 634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작년도 예산심의 결과 채용 규모를 400명으로 축소하였으나 국세청은 100명 증원하여 50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을 채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법률 관련 성과 확인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고요.

1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따라서 동 내역사업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본예산의 취지 및 국세징수법 개정 시 채택한 부대의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 및 요건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충분한 사업성과 확인 후 본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경쟁률이 16.8 대 1에 달하는 등 일자리 수요가 높은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투입예산 대비 3배의 징수 효과가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추경안 원안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유를 좀 설명하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국세 체납관리단을 3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체납 실태 확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재정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전쟁에 따라서 취약계층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종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회수율·정리율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행정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것보다 과감하게 일제 점검·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김태년 위원님,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예.

○이인선 위원 차장님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 국세청 소관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체납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일부러 체납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3월 5일에 시작해서 400명의, 국세청은 자율적으로 100명을 추가해서 50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2500명 채용을 또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데 이것은 단기 알바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 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끼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그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와중에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긴박하게 이번 추경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효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결국 맞춤형 체납정리이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일제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설명자료 한두 페이지짜리라도 준비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왔고 그래서 2500명을 언제까지 뽑아서 지방청별로 몇 명씩 되서 무슨 활동을 해 가지고 무슨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서 빨리빨리 체납한 것 정리하고 징수할 것 징수하고 재원 확충에, 정부재정 확충에

도 도움이 되고…… 이걸 클리어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지금 현재 한 달을 채 못 했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8000여 명을 실태확인을 해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납부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생계형채납자도 굉장히 많이 신청, 한 3000여 명 신청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징수 비용의 한 3~5배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맞춤형 채납정리를 통해서, 즉 고의적이고 고액의 채납자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고의적인 채납자나 또는 미필적 채납자, 자기가 채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실제로 꽤 있거든요. 여기는 찾아서 징수하거나 또는 징수 안내를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거고.

방금 생계형채납자라고 그랬지요, 불가피한 채납자 같은 경우. 도저히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채납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채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데 장애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정리를 해서, 어차피 못 받을 텐데.

○국세청차장 이성진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도입됐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클리어시켜 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익 아니냐 이런 취지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원래 국세청 업무가 아닌 것도 다 가져와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 수정이유들 쪽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이게 추정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500명 하기로 했는데 100명 줄여 가지고 오히려 감액을 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대폭 늘려 오는 게 우리 예산심의 취지에 맞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의 성과도 불분명한데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단 말이지요. 이런 지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안 유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보면 기간제 채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경쟁률이 무려 16.8……

○국세청차장 이성진 17 대 1 정도 됩니다.

○김태년 위원 17대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공공일자리 아니에요, 매우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일자리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데 가는 비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안 유지와 관련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수정이유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성과와 관련해서 설명도 해 달라라고 요청도 했지만 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

가 도와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성훈 위원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하고 차장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요?

○이인선 위원 그래요.

○박성훈 위원 앞부분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과 추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차장님, 추경 편성의 법적인 근거 또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민생을 지원하는 성격과 또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업무는 이와 굉장히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많을 텐데 재정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종전에 누수되었던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재정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즉 생계형체납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기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차장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정부가 지금까지 추경을 수십 차례 더 했을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요. 매번 위기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논리대로 했으면 이런 사업들…… 원래 꺼내신 게 지난 연말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때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이었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당시에 2026년도 예산 신청할 때 500명 기간제근로자 가져왔다가 저희가 100명 깎아서 당시에 제도 보완 및 추가 검토 필요 단서를 붙여 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달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국세외의 경우에는 7000명을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세청이 가지고 왔었던 논리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점, 이걸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국세청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아마 전쟁 추경을 핑계로 해서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추경 사업에다가 포함시켰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요 체납관리단 운영에 불필요한 홍보 비용 2억 2700만원, 외부 업체를 통한 채용 위탁용역비 2억 원, 노무관리 위탁용역비 4억 7400만 원, 업무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비 2억 17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랑 추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당초 국세청은 3년 한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분명히 저희에게 제출했었는데 연도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놓고 갑자기 3년 사업을 1년으로 몰빵하고 인원도 500%나 추가 증원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와 직제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들 무려 750명이나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마음대로, 재정 규율을 흐트러뜨리면서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논리를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국세청 차장님, 한번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설득 당할 수 있는 명료한 논리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효과가 검증됐습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지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조 위원님.

○조인철 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국세 체납액은 11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세외수입은 16조 정도 됩니다.

○조인철 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국세청차장 이성진 사람으로 따지면 국세는 133만 명이고 국세외수입 체납은 384만 명입니다.

○조인철 위원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의, 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은 그중 몇 %나 됩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 대략.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자는 것 아니야.

○조인철 위원 제가 보면 대략 한 10~20%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망했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하신 국세체납 인원이나 특성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조인철 위원 아니, 대략이라도 이야기해 보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대략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예산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대략도 판단을 못하고 이걸 편성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박성훈 위원님이나 이인선 위원님이나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충 보면 10~20% 정도는 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정리돼야 될, 국가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서 다시 제도권·경제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한 133만 명이면 거기에 20% 빼고 나면 100만 명 이상인데 4인 가족이면 400만 명이에요. 시급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인철 위원 돈을 걷고 안 걷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지금 이 사람들을 빨리 경제활동으로 회복을 시켜 줘야 경기가 살아나든 죽든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빨리 살아나야 되고.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대략이라도 그런 것은 계수를 하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는 대략 20만 명 좀 넘습니다. 133만 명 정도……

○조인철 위원 고의 체납자?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는……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한 말씀……

○김태년 위원 잠깐, 같은 이야기라서……

○박성훈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태년 위원 내가 같은 이야기라서 하나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차장님하고 국장님이 자신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앉은 분들이 더 잘 알면 설명을 하세요. 이게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왜 설명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태년 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시행해 본 거지요, 그때 사전 해 가지고?

○박성훈 위원 한 달 반 정도 했지요.

○김태년 위원 한 달 반?

○국세청차장 이성진 아니요, 3월 5일부터 해서 지금……

○김태년 위원 한 달 했다고 치고.

한 달 해서 우리가 실태 파악들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실태확인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김태년 위원 방금 조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고의적 또는 미필적, 하여튼 불가피한 체납 이걸 한 달 정도 해 본 데 있어서는 통계가 어렵듯이라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게 퍼센티지로 어떻게 돼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달 정도 했는데 1만 명 정도 저희가 실태확인을 진행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하여튼 해 보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리고 작년엔 조특법 개정해서 체납액 소멸 제도가 들어

와서 5000만 원 미만의 체납액은 정부가 나가서 실태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와서 심사하면 없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월 한 달간 세무서에 3000명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까 차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장에 다녀본 결과로는 중동사태뿐만 아니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절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많아요. 많은데 비율이…… 1만 명 해 봤다고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김태년 위원** 실태확인을 1만 명 했더니 정말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이 1만 명 중에?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래서 4월 2일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 800명 이상이 납부를 했고요.

○**김태년 위원** 질문을 참……

얼마를 건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계형체납자, 내고 싶어도 도저히 못 내는 체납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국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대상자 중에서도, 1만 명 중에 한 8000명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든지 9000명이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지금 1만 명 정도 실태확인을 하고 실제 납부한 사람이 한 800명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조인철 위원** 거의 9000명은 생계형이라는 거잖아요, 돈 낼 수 없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은 추정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네,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김태년 위원** 낸 사람이 800명이면 8%인데 그중에는 딱 실태조사 오니까 그냥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낼 수는 있는데 조금 미뤄 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얼추 잡아도 맥시멈 20%네, 낼 수 있는 사람이.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80%는 낼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료를 누구 얘기해서 만들든지……

체납 110조 이야기는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정리 안 한다고, 안 걷는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다가 안 됐고 이번에 추경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추경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적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110조나 되는 체납액에서 30조든 40조만 거둬도 세수 핑크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두 번째는 생계형체납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이것을 딱 해 가지고 몇 % 몇만 명, 그리고 이 사람들을 2500명 뽑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스케줄로 정리를 해 나갈 건지.

이 사람들을 뽑으면 언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리할 거예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일단 올해 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걸 즉 정리를 해 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올해 안에 다 하려고 하고요.

○조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립 이후로 이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처음에 전수……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엄청 쌓여 있는 거고. 그것을 정리해 줘야 이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언제까지?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이번 추경에서 주시면 올해 연말까지 다 정리하려고 지금……

○소위원장 정일영 연말까지? 내년에는 안 해도 돼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해 하는 것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목표가.

○김태년 위원 올해 말.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 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면 올해 말까지 싹 정리하겠단 거예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지금 500명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12만 명의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2500명 추가했을 때 12만 명에 38만 명을 더 해 가지고 50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이 가능합니다. 절반 정도 수준이고 내년에 한 절반 정도를 더 추가해서 실태확인을 하면……

○소위원장 정일영 27년까지 운영해서 다 정리를 끝내겠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28만 명이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지금 500명으로 12만 명 그다음에 2500명으로 38만 명 해서 50만 명을 올해 실태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 요건에 맞지도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효과성을 보더라도, 이 금액이 2133억입니다. 혹시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감사원·공정위 지출예산 규모를 혹시 아시는지요? 공정위가 1892억 원이고요 감사원은 1444억 원이고요. 지금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 그것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넣겠다고 하는 예산 규모가 213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예산실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돈에 한 부처의 1년 예산을 다 담겠다는 게, 그것도 추경사업으로,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 28만 5000명의 체납액을 신속히 소멸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2133억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면서 정작 30만 명에나 가까운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시키겠다 이것

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앞에서 500명 채용하면 결국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대다수인데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의 은퇴자가 6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인데 이게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국세청에서 체납관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을 했는데 68명을 투입했어요. 투입예산은 1억 40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9월의 현금정리액이 1년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3.5%로 가장 낮았고요. 국세청의 주장대로 68명이 추가로 3억 원을 더 걷었을 뿐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하지 않을 때를 보면 11월에는 5억, 4월에는 5억 6000,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을 풀기로 작정을 하고 나와서 이런 사업을 추경 사업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들을 각 부처가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추경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중동전쟁 이전에 들고 왔던 사업들을 추경 명목으로, 그러니까 전쟁 핑계로 추경에다 끼워 넣겠다? 도대체 이런 식의 사업이 반복된다고 하면 기획예산처는 왜 존재하고 국회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심의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외수입 같은 경우 현재 거의 3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세외수입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관련 법은 다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만 신청하는 것도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위원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은 국세 체납 파트만 했어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두 번째는 이제……

○소위원장 정일영 묶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박성훈 위원님이 국세외 체납까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국세 체납관리단만 하면 2500명에 634억이라고요. 2100억은 다 포함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그 파트까지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아니면 국세체납만 해 가지고 634억이에요. 그건 액수가 훨씬 줄어들어.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는 국세체납 634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증액분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34억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국세 체납관리단은 634억이야.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게 다 통과되면 160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수정안이……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합쳐지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다 합치면 이 관련 예산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82억이고요. 이게 634억에서……

○조인철 위원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거지.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 이게 수정해 달라는 거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2133억을 추경으로 올려 놓고……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한 2300억 정도 투입하면…… 지금 징수할 목표액이 얼마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 논의를 먼저 해요, 국세 체납관리단 파트만.

○박성훈 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다 할래요, 묶어서?

○박성훈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그것도 보고를 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페이지입니다.

같은 압류재산 공매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이 아까는 국세 체납관리단이었고요 14페이지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입니다. 이 부분은 1499억 6200만 원 신규 증액하는 사업인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일용임금 851억 등 149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의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7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추경예산안의 목적 및 요건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일자리 수요가 높은 공공일 자리를 공급하고 투입예산 대비 3배의 징수 효과, 생계형체납자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15페이지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보다는 국세외수입 포털 등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은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차장님, 법적 근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재정위에 계류 중인 한테 25개 개별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부 측 의견을 주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저희는 이 안과 관련해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위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위탁 징수 규정이 없는 국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법 제 8조(행정응원)에 의한 규정을 활용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현장 확인을 더욱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조 위원님.

○조인철 위원 차장님께서 법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법적 근거가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지만 다만 통합 법적 근거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용어를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조인철 위원 그리고 중동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 그 자체 추경인가요? 아니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조인철 위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추경이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다음에 추경 때도, 경기 안 좋을 때 추경 들어가면 항상 공공일자리 창출도 했어요, 하다못해.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이 사업을 공공일자리 창출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다만 지금 차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 실태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박성훈 위원 그러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도걸 위원님이 그래서 국가채권 관리법을,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만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국세 체납관리단이야말로 법도 없이 이렇게 후다닥 끼워 맞추고 예산만 하더라도 2133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올해 100억 원 작년에 통과가 됐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 편성이 2133억 늘어나고요. 아까 행안부 직제 개정까지 하면 공무원 750명 증원하면서 500억의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273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제대로 된 자료나 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도 없이, 법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정 사업이라고 밀어 넣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법령 관계를 명확히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25개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서 즉시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했고 또 징수 위탁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서 부처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제가 좀……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이에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이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셔서 국가채권 관리법에 체납정리에 관해 과세정보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5개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 위탁계약 등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세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개별 법률에는 국세청에 위탁 징수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을 안 고치더라도 국세청에 징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징수 위탁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법제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보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부처와 위탁계약을 하면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정리에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 확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국가채권 관리법에 없더라도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쨌든 국세의 체납된 액수는 한 17조 정도 되나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7조. 그러니까 국세채납이 110조, 111조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요. 적은데 투입 인원은 지금 국세외채납이 7000명, 1500억. 그렇지요? 그리고 국세채납이 2500명. 그러니까 비중으로 봐서는 국세채납이 훨씬 크기는 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런데 채납자 수가 국세외수입 채납자가 세 배 정도 더 많습시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원장 정일영 국세외채납이?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84만 명 정도 되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133만 명.

○소위원장 정일영 거의 한 세 배 가까이 되는 거지요, 액수로 봐서는 그렇지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세 배 정도. 그래서 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좋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진짜 이것은 당연히 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예결소위에 참여하셨던 모든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도 성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나오면 그때 확대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밖에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도 분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뒤집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그런데 돈이 충분하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채납도 해 주고 다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납세 하는 자들이 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규모도 너무 크고. 오늘도 방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회의할 때 국가채권 관리법을 안도걸 위원님이 설명을 하면서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또 추경 있을 거고 본예산도 있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오면 다른 전체의 추경이 아주 혼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세입 확충한다 했다가 이제는 채납을 탕감하겠다는 이러는데 또 안에 보면 청년 일자리도 그다지 없다고요, 70%가 60대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주먹구구식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시선보다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구나 하는 게 좀 명확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숫자도 너무 많고 한 달밖에 안 났고 또 법령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태년 위원 법령은 해소가 됐고요. 25개 법안에 국세청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법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해소가 됐고.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실태확인원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국세는 한 240만 원 되고요 국세외는 한 280만 원 이상 됩니다.

○김태년 위원 국세외가 더 많이 줘?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시간이 좀 차이 납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김태년 위원 중장년 일자리도 소중합니다.

○이인선 위원 물론 소중한데 처음에 얘기할 때 청년·여성·경단녀 이렇게 했다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단녀까지 다 포함해서.

○조인철 위원 청년은 좀 뺀 것 같고요.

○김태년 위원 청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골고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쉬었음 청년 다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청년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들도 있고 또 은퇴한 중장년들도 있고. 아주 고령은 이것 못 하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그래서 응급 시에 응급처방용 일자리로는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장기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번 추경 저도 자세히 봤는데 비교적 깔끔해요. 너저분하지 않아요.

○이인선 위원 이 부분은 뭐 시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이게 9500명 뽑아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하고 하면 한 1만 명. 세무서별로 근무하는 거지요, 전부 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국세체납 파트하고 국세외체납 파트하고 따로따로 근무해요, 같이 근무해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일단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세하고 국세외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통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좀 다르지. 그러면 세무서별로 몇 명 정도 근무를 해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보통 큰 세무서 같은 데는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작은 데는 한 사오십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세무서장님이 잘 챙기면, 열심히 일하면 효과가 많이 나오겠네요.

○조인철 위원 세무서장은 골치 아프겠네.

○소위원장 정일영 세무서장은 일 죽어라 하고 해야 되겠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 기간제니까 그래도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채용하는 것은 오래 안 걸려요? 괜찮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석 달 정도……

○소위원장 정일영 석 달 정도?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조인철 위원 그래서 일자리 기관에 줘서 채용하겠다 이런 거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렇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채용 위탁기관.

○조인철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해서는 부담스럽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어떻게 한번 해 보시지요.

○조인철 위원 일자리를 좀 늘려야지, 지금.

○김태년 위원 한번 해 보고……

○박성훈 위원 추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인선 위원 아니, 한 달밖에 안 났는데 갑자기 500명에서 2500명 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소위원장 정일영 많이 채워서 쌓여 있던 것 싹 숙취를 해소하고 깔끔하게……

○박성훈 위원 효과가 분석이 되면 그때……

○김태년 위원 분명한 것은 재정 투입 대비 수입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놓고 보면.

○조인철 위원 일자리도 생기도 거기다가 한 300~400만이 현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4인 가정은 1200만이……

○김태년 위원 투입 대비 수입도 늘어날 거고. 물론 단기 일자리는 하지만 어쨌든 응급용 일자리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체납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또는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해소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까지 본다면,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런 것은 하려면 신속하게 한번 하는 게……

○소위원장 정일영 경북·대구에 관련되는 체납자 몇 명이나 돼요?

○조인철 위원 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거기다가 이런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이런 것을 보면 빨리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인선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조인철 위원 너무 늦다,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올해 다 지나가 버려요.

○박성훈 위원 잘못된 추경은 전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구요. 시급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추경의 요건에도 저희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예결소위 때 합의했던 내용이 일단 성과를 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담으려고 그랬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담았겠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것도 인건비를 대폭 늘려 가면서 담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 원만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그것도 추경 사업으로 반영시키겠

다는 것은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가 다음에 조달청 것을 하는 동안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 갈증 등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싹 해소할 수 있다는 자료 하나 만들어 오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제 그만 얘기해요. 그만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내가 얘기하라 그럴 때만 하고……

○**박성훈 위원** 법적 근거만 한 번만 좀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 자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개 법률에서 국세청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국세청에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안이 개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응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8조 6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82페이지의 6항 보시면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세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전문위원님, 그 규정 지금 들어 보니까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 중앙행정이든 양 기관 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비용 분담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요? 첫 번째 내가 해석해 줄게. 첫 번째 다시 읽어 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1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읽어 봐요, 핵심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개별법에서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기억났어. 공무원 신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 그것 국세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국세청이 뽑아 가지고 국세청 공무원 신분 주면 되지. 기간제공무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공무원이니까 국세청장이 임명해서 기간제공무원 임용하면 되지. 그 정도니까 다시 검토해서……

○**박성훈 위원** 실태확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공무원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는 바로 수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위탁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이 동의하면 된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부처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각 부처가 맺으면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돼요. 그것은 법제처의 해석까지 받았단니까 자료 하나 좀 이따 가져오고. 조금 나가 계시고, 조달청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오셨지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차장 강성민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리고 옆에 기획조정관?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조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 조달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경안이 26억 원 신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계약체결 전 페이퍼컴퍼니를 낙찰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찰 후 낙찰 우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확대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 목적인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경제위기 대응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충분한 사업성과 확인 후 본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26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에 반해 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로 페이퍼컴퍼니 적발 및 퇴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원안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환경 조성 및 안전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증액을, 자본계정 기본경비에 1억 3300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운영경비 항목에 동 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를 1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차장 강성민 조달청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얘기를 해야지.

○조달청차장 강성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하고 증액 관계도 얘기하세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일단 감액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제대로 못 갖췄거나 사무실이 제대로 요건에 안 맞거나 자본금이 부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특히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건설기술자들은 제대로 못 하면서 안전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제대로 못 갖춰서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금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그리고 경기도·서울시·충남도에서 해 봤을 때 사실조사에 들어갈 경우 기본적으로 20%의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요. 또 그 나머지 낙찰 대상자로 선정했던 업체들의 약 25% 정도가 이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산할 때는 한 35~40% 정도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한 65% 정도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낙찰 기회 박탈이라고 하기는 뭐한데요 낙찰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기회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조사 증액 요구 건이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 파트.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 했는 데요. 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 저는 제 말 하고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 저한테 위임해 주시고 나가는 거지요?

○이인선 위원 아니지요. 박성훈 위원님하고 해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중동 경제위기 대응 목적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업 검증 후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지금 조달청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조사 수행을 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까? 그다음 개별 성과용·알바용 사업은 예산 낭비가 심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에서 국세의 체납관리단을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안에 제대로 태워서 올해 예산 시준에 넣거나 후반기에 어차피 추경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든지 조금 더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시급하게 필요하다니까 막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도…… 지금 어쨌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우선 기간제 사실조사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처분과 관련, 그러니까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해야 맞습니다. 조사를 나갈 때 원래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안에 서류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저희 목표는 일단 길어도 2년 정도만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서류 간소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2년 후에는 전부 소수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동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건설업이 지난해 해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도 시설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페이퍼컴퍼니들이 낙찰 못 받게 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기회를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시장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시장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은 국토부는 소수의 샘플들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한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우연히, 국토부 샘플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서 남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조달시장에 들어와서 낙찰 기회를 가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주기관에서 패이퍼컴퍼니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쟁 추경, 전쟁하고 전혀 관련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전혀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부분이지만……

○소위원장 정일영 좀 있어요, 있어.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나가서 또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한 업체들이 나갈 수 있게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패이퍼컴퍼니들이 난리 치고,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또 중동 어디에 가서 개판 치면 안 되잖아요. 사전 정비작업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하시네요. 맞나 봐.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제는 본예산이 필요 없겠지요. 본예산에 적당히 담고 반영 안 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 넣으면, 명분이야 어떻게든 만들지 않겠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도 없었고 건설업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텐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찰자격 사전조사의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본예산에 넣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일단 개찰 이후에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의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나 규모도 적절치가 않고요. 추경 사업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경 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도 아니고요. 정작 조달청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담아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첫 번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내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차장 강성민 법적인 근거는 국가계약법, 그러니까 법 차원이라기보다는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조사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업체들이 면허상 그게 있는지만 봤는데요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다고 저희가 볼 때 건설업체의 한 30~40%가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업체의 평균 한 25% 정도는 못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진짜 기술자 여부나 사무실, 자본금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성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준비는 사실 2년 전부터 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 만들고 조사하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사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맞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한 거고 시급성 차원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 실태조사를 언제 해 보셨어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일단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인철 위원 언제 해 본 적 있어요, 조달청이?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조인철 위원 시범사업이 처음이에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처음입니다.

○조인철 위원 한 번도 안 해 봤고?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지난해에 했던 게 처음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업무를 해태한 거지요. 이미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기반 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 만들고 입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여태까지 정부에서 해태하고 있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하자라고 하면 또 1년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1년, 2년 늘려서 갈 게 아니고 하루라도 급하게 빨리해야 된다.

이게 몇 명이나 고용합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42명.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기간제 42명.

○조인철 위원 공공일자리 형식의 일자리 창출도 부가적으로 생긴다, 그런 거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 하셨어요?

○조인철 위원 예.

○박성훈 위원 아까 시범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전에 없고요, 작년 9월부터.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작년 9월부터인 거지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박성훈 위원 몇 건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와 서울시가 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위원 총 몇 건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가 15건……

○박성훈 위원 15건을 해 보고 이것을 전국에다가 전체 다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4페이지에 하단부 표 밑에 보시면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0조 2항에서 사실조사가 근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조 부분은 참가신청 단계기 때문에 이게 낙찰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낙찰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낙찰 이후에 사실조사를 한다는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시급성이나 이런 건, 못된 회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서라도 빨리 진행…… 이것 액수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네, 26억이니까.

○조인철 위원 지금까지 이런 실태조사를 왜 안 했을까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인력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업계의 반발이나 페이퍼컴퍼니들 상당히 된가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어떤 측면에서……

○조달청차장 강성민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

○조인철 위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번도 이것을 안 했다 그것은 조달청이 됐든 건설부가 됐든 누군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저는.

○소위원장 정일영 잘못했지.

○김태년 위원 로비?

○소위원장 정일영 로비도 있을 수가 있지요.

○조인철 위원 로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해서 하겠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차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제대로 해서 건설업계를 정화시키고 건설업계가 제대로 가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시가 급하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돈도 많이 안 든다,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 일석삼조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것들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한 2년 전인가 조달청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철골 빼먹고 아파트 무너뜨린 그게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김태년 위원 순살?

○소위원장 정일영 순살인가 뭔가 그 사람들 입찰자격을 뺏어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또 따먹었더라고, 또 따먹고. 그때 개선하도록 한참

얘기했는데 개선했나 모르겠네.

○조달청차장 강성민 계속 추가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사람들이 소송 제기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못 해요? 아직도 해?

○조달청차장 강성민 지금 계속 추가적인 보완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요. 이것도 유사한 건데 페이퍼컴퍼니들이 사고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걸러 내 버려야지, 하루빨리 신속하게.

○조인철 위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맞지요?

이건 박성훈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박성훈 위원 저는 이런 것 다 추경에다가 가지고 들어오면 도대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 급해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박성훈 위원 이걸 본예산에 담아 와서 제대로 심의를 받으셔야지 전쟁 추경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입찰자격 사실조사하고 전쟁 추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추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인철 위원 박 위원님 말씀 지금 현 체제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주변 환경, 예산 환경이 계속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1년 전에 편성해 놓은 본예산이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면 쟁쟁하게 추경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상황이 시급하게 바뀌는데 1년 전에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그걸 다 반영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재정법에 있는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조 위원님,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요 만일에 이게 관행화되면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럴 겁니다, ‘이번에 못 담은 것 한 두 달 후에 추경 할 테니까 거기 담아 드릴게요’. 분명히 재정 당국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많은 요구를 재정 당국이 다 소화를 못 하니까 분명히 ‘다음 추경, 곧 한두 달 후에 추경 할 테니 거기 담으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야당이 아니라…… 이 돈이 그냥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심사도 하고 진짜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를 찾아서 쓰여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민원성 사업들, 각 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들 다 추경에 끌어 담아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하려면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기재부의 제대로 된 사업 심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지 지금처럼 시급하게 며칠 딱딱 해 가지고 예산실 직원들 밤새워서 가져온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재정통제 측면에서도 보지 않고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추경에 포함돼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삭감하고 뺄 만한 이유도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포함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포함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에 붙이든지 아니면 예산처의 총괄국장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다짐도 한번 받든지 그래서……

○조인철 위원 혼내 주든지?

○소위원장 정일영 혼내 주면서 그 의견을 좀 달아서……

사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부실한 건설업체들 걸러 내겠다고. 아까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전쟁 끝나면 많은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나갑니다. 나가서 공사 잘해야 수주도 잘되고 더 발전하고, 건설업체가 가뜰이나 어려운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고 해서 통과시켰으면……

○박성훈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저는 재정통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재정 당국도 그렇고 저희도 재정 규율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요 본예산에서는 부별심사, 부처 심사에서도 탈락할 사업들이 추경을 거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반영되는 이런 관행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그것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주고 기획처에도 얘기하고, 이걸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남은 게 국세청 거지요?

○조인철 위원 다 된 것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까 국세청 것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5분간만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고 4시에 다시 속개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 소관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정부는 향후 광주·전남 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통합 수요 발생 시 지방채 인수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소위원장 정일영 동의한 내용은 지금 여기 별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따로 드렸습니다. 보디캠만 빼고 다 들어간 거예요.

○소위원장 정일영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액을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부대의견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향후 추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김태년 위원 노력한다.

○소위원장 정일영 노력한다? 화끈하게 ‘한다’ 하고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수 이견이 있어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심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회의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이견 뭐 방망이 두드릴 필요가 없네요.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태년 박성훈 이인선 정일영 조인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국고정책관 허승철

기획예산처

차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국세청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김휘영

조달청

차장 강성민

기획조정관 이형식

시설사업국장 임병철